

1. 개정이유

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망을 지칭하는 용어는 멸실보다 폐사가 정확하므로 법률용어 변경을 통해 용어의 정확성과 효율적 적용 도모

2. 주요내용

가. 동물 사망을 지칭하는 멸실을 폐사로 변경

- 1)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 중 “멸실·유실·도난·훼손”을 “폐사·유실·도난·훼손”으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4호 단서 중 “멸실·유실·도난·훼손”을 “폐사·유실·도난·훼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)	제11조(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)
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서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신고서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 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별지 제2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 는 명승의 멸실·유실·도난 · 훼손 신고서. 다만, 천연기 념물인 동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<u>멸실·유실·도난·훼손</u> <u>신고서</u> 에 따른다.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<u>폐사·유실·도난·훼손</u> <u>신고서</u> -----.
5. ~ 9. (생 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 서식]

천연기념물인 동물의 []폐사 []유실
[]도난 []훼손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일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 :)	

자연유산의 명칭

암/수	연령	새끼[]	성체[]
신고내용	사고 연월일		
	사고 장소	위치좌표 N ° ' " E ° ' "	
	사고 원인 총 돌[] 찢길사고[] 질 병[] 굶주림[] 자연 새[] 포식[] 중독[] 안락새[] 기태[]		
	세부 사고 내용		
	조치 내용		

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제5호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[]폐사 []유실 []도난 []훼손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 귀하

첨부서류	관련 사진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	--------